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국민의 내일을 위한 서비스혁신 보다 나은 가족정책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9. 3. 24. 보도일자 : 2019. 3. 25.(조금)	담당부서	가족변화대응본부 인식개선사업부
	담당자	부 장 : 허지은(02-3479-7770)
		담 당 : 이주현(02-3479-7771)
	■ 총 14쪽 ■ www.kihf.or.kr ■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4년간 양육비 404억 원 받아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4주년 운영 성과 점검 -

신청인(양육자)은 피신청인(비양육자)과 교제 중에 임신하게 됐다. 혼인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하던 중이어서 신청인은 임신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렸지만, 그 후, 피신청인과의 연락이 서서히 끊어졌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추진했다. 또한 자녀 출생 시점부터 과거 양육비 12개월분 6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만원 청구를 진행했다. 피신청인이 수검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신청을 진행한 결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무대응과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수검명령 위반, 자녀가 피신청인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쌍방 간 대화 내용 등의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며 자녀가 피신청인의 친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 결과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판결에 승소하여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과거 양육비 6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60만원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다.

-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집」 법률지원 서비스,
 ‘유전자 검사 없이 미혼모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4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3천 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 조치,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양육비 실제 이행 건수	3,722	514	1,044	1,018	1,146
이행 금액	40,394	2,526	8,596	14,184	15,088

□ 개원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 7천 건, 이행 지원 신청·접수는 약 1만 7천 건에 육박하였으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 (90.7%)로 이루어졌다.

○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 거주가 54.1%였다.

<양육비 상담·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	116,912	30,757	28,328	25,755	32,072
접수	16,951	5,756	3,588	3,682	3,925

○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원, 최장 12개월)’은 지난 4년간 총 224건, 약 3억9천2백만 원이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부모-자녀 간 관계개선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공모전 및 홍보단 운영,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등의 활동과 양육비이행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특히,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연장(최대 9개월→12개월)되었고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절차가 송달에서 통지로 간소화 되었다.

- 아울러, 올해 6월 25일부터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치가 가능하며,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양육비이행 신청인의 편리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하고 연속성 있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 상담·신청(접수) 문의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없이) 1644-6621
- 온라인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붙임】 1. 양육비이행관리원 4년 운영성과**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우수사례(4건)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① 양육비 이행 실적

○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2018년 12월말까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준 건수는 총 3,722건

○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약 404억원 달성

※ (2015년) 25억원 → (2016년) 86억원 → (2017년) 142억원 → (2018년) 151억원

② 양육비 상담·접수 현황

<양육비 상담·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	116,912	30,757	28,328	25,755	32,072
접수	16,951	5,756	3,588	3,682	3,925

※ 상담 : 신청·접수 문의, 지원서비스 문의, 비대상자·기신청인 상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접수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접수) 된 건

○ 출범 이후 2018년 1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총 116,912건

※ 상담 유형별 : 전화상담 90.7%, 온라인상담 6.9%, 방문상담 2.4%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접수는 총 16,951건

※ 자녀 연령별 : 1세~5세는 6.7%, 6세~10세 27.4%, 11세~15세 35.0%,
16세~19세 30.9%(평균 연령은 11.9세)

※ 가족 유형별 : 이혼 한부모 94.4%, 미혼 한부모 5.6%(조손가족 0.4%, 다문화 한부모 2.0%)

※ 지역별 현황 : 수도권 54.1%(서울 18.3%, 경기 27.5%, 인천 8.3%)

□ 한시적 양육비 지원

-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총 224건(지원자녀수 395명)으로, 현재까지 실 집행된 금액은 약 3억9천2백만원임

□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

- 2016년부터 양육비 이행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간 면접 교섭을 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실적>

(기준 : 연인원, 단위 : 명)

계	2017년	2018년
679	286	393

※ '16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통계에서 제외

□ 양육비 이행지원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 대국민 양육비이행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국가전광판, 지하철액자·버스외부·라디오·TV자막 광고, 언론보도 등 오프라인 홍보 실시
 - 웹드라마 제작·송출, 카드뉴스,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진행
 - 웹툰 및 e뉴스레터 제작·발송
 - 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수사례집,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실시
- 국민참여형 홍보 활동 개선
 -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전 진행, SNS 홍보단 운영
- 전국 지자체 공무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접점기관 관계자 대상 지역설명회 및 찾아가는 교육 개최

[사례 1]

추심지원 사례_미지급 양육비 지급 및 장래 양육비 확보

부동산 자산가 아빠, 양육비는 ‘나 몰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발송한 후 합의를 중재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두 번의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도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지급을 회피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 12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당사자 간 조정애 참여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취하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목돈 7천만원을 당장 지급하고, 미성년인 둘째 자녀를 위해 장래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애 합의하였다.

힘들게 두 아이 키웠는데 아빠 홀로 승승장구

2006년 7월 이혼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신청인(양육자) Y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억5천만원이 넘었지만, 6회에 걸쳐 지급한 양육비는 겨우 290만원뿐이었다.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유통업자로서 감정이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신청인(양육자) Y씨는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양육해 왔다.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로 결심한 신청인(양육자) Y씨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요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청구서를 발송한 후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가 총 양육비를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고 이마저도 매월 50만원씩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가 결렬됐다.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실제로 추심된 양육비는 없었다.

부동산경매에 압박 느껴 7천만원 지급

이후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의 사업장이 C씨의 소유로 확인되어 담당자는 2017년 12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2018년 2월, 법원에 양육비 금액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청구이의의 소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의 양육비 채권과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채권이 2006년 말 합의로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실과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가 자녀들에게 용돈 형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거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7천만원은 일시금으로, 장래양육비는 2018년 6월부터 20회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 조정성립에 따라 부동산 경매 절차를 취하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신청사유

1억원 넘게 받지 못한 두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자 추심 지원을 신청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판결문: 2006년 6월 1일~2018년 5월 21일까지 월 100만원, 2018년 5월 22일~2020년 4월 16일까지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 지원결과

목돈 7천만원을 당장 지급받고, 미성년인 둘째 자녀를 위한 매월 15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였다.

[사례 2]

모니터링 지원 사례_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양육비 지급

성년이 됐지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2016년 9월 신청인(양육자) L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가 양육비 합의를 하였으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가 전액 이행되었다.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2012년 2월 협의이혼을 한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는 법원 판결 이후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시까지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가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는 총 2,700만원으로(월 50만원씩 54개월)이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양육자) L씨가 미지급 양육비 2,700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월 70만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미지급 양육비 전액 완납

합의서 작성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매월 양육비가 지급되었는지를 모니터링 실시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려와 설득으로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는 미지급된 양육비 없이 2018년 9월까지 양육비 완납하였다.

■ 신청사유

이혼 당시 법원 판결이 났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 지원결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미지급 양육비 2,700만원 중 1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신청인(비양육자) S씨가 신청인(양육자) L씨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월 70만원을 매달 지급하였다.

[사례 3]

면접교섭 지원 사례_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한 자녀와의 관계 개선

자녀를 만나지 못해서 속상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면접교섭 서비스의 상담 절차를 통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피신청인(양육자) N씨와의 갈등을 피하고, 불안했던 자녀의 심리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인(비양육자) L씨와 자녀가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해 가면서 신청인(비양육자) L씨와 자녀가 점차 교감을 이루었고, 점차 양육비이행관리원 외부에서 직접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양육비의 지급으로 안정적인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면접교섭 없이는 양육비 보낼 수 없다는 아빠

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2013년 4월 재판상이혼 당시 약속했던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2015년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한동안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또다시 면접교섭이 중단되었다. 특히 피신청인(양육자) N씨가 신청인(비양육자) L씨와 접촉을 일절 원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활하게 지급되던 양육비가 자녀와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신청인(비양육자) L씨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던 비양육자 L씨는 결국 2017년 5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피신청인(양육자) N씨와 자녀를 위해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을 모두 맞춰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피신청인(양육자) N씨는 신청인(비양육자) L씨의 적극적인 태도에 힘입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 진행에 동의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과 자녀의 분노를 이해하다

총 7회에 걸쳐 양육자와 비양육자, 자녀에 대한 개별면접교섭 서비스가 실시됐다. 양육자인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비양육자인 아빠에 대한 상담과 양육 코칭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인 엄마의 심리적인 지지와 비양육자인 아빠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격려가 이뤄졌다.

또한 이혼 이후 한부모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면접교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과 이혼 뒤 양육자로서나 비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코칭도 이뤄졌다.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의 심리 살피기와 면접교섭에 대한 심리적 준비 등 건강하고 성공적인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면접교섭 상담이 끝나고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면접교섭 모니터링 서비스가 이뤄졌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실에서 면접교섭이 진행된 것이다.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감정기복이 사라지다

정기적인 면접교섭 연습 기간 동안 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자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더 좋은 면접교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도 아빠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뤄지자 더 이상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로 모순되었던 감정적 기복이 줄어들면서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다.

성공적인 면접교섭 연습 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21일 자녀의 생일을 맞아 첫 외부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신청인(비양육자) L씨 역시 양육비 월 6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 신청사유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바라면서 면접교섭 서비스를 신청했다.

■ 지원결과

면접교섭 상담 서비스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양육비가 월 60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례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례_자녀 병원비 마련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병간호로 실직한 아이 셋 엄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신청인(양육자) L씨가 자녀의 병원 치료비 해결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실직까지 겹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담당자가 소개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었고, 이후 총 30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자녀의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치료비도 막막한데 양육비도 끊겼어요

2017년, 피신청인(비양육자) R씨는 신청인(양육자) L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비양육자) R씨는 총 270만원만 지급했다.

신청인(양육자) L씨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월 120만원 정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7년 3월 첫째 자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청인(양육자) L씨는 자녀의 병간호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상황에 처했다.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후 피신청인(비양육자) R씨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녀의 치료비는 물론 생계까지 막막해진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희망을 찾다

신청인(양육자) L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신청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문의 중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게 됐다. 이 제도를 통해 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자녀가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재활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 바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2018년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30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첫째 자녀 병원비는 물론 다른 자녀들의 복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6개월 지원을 약속한 마지막 달에 긴급지원 연장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양육자) L씨가 파트타임 근로를 시작하였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개월 연장지원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덕분에 막막했던 제 삶에 한줄기 희망을 찾았어요. 세 명의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 신청사유

자녀의 교통사고로 실직 중인데 협의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와 아이 셋의 양육비를 위해 긴급지원을 신청했다.

■ 지원결과

2018년 3월 총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았다. 또 3개월 연장지원을 신청해서 2018년 9월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아서 9개월 동안 모두 45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